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지역 주민의 체육시설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시설공단의 경영악화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고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의 일관성 확보(안 제1조)
- 사용료의 조정 및 감면 조항 개정(안 제10조, 안 제10조의2, 별표 1, 별표 3, 별표 4)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기 타 : 2013. 3. 14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침.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시설공단의 경영악화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고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 안 제10조, 안 제10조의2, 별표 1, 별표 3, 별표 4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사용료의 조정 및 감면 조항을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2006년 6월 책정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시설공단의 경영악화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고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